

어진 아내와 순진한 아이들은 그들의 술수에 빠져서, 스스로는 공정하게 아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금방 신임하지 말고 천천히 사리를 따져 만약 그의 말이 과연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곁으로 드러내지 말고 잠자코 그 일을 선처해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이 간사한 자들의 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경위를 캐내고 내막을 들추어내되, 본 사건 외에 청탁한 죄까지 더해 반드시 법에 명백히 비취 크게 징계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들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아내와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그 나머지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상헌(金尙憲)은 벼슬살이를 청렴하게 하였다. 어느 관리가 자기 부인이 뇌물을 받아 비방을 듣는 것을 걱정하자, 그는 “부인의 소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방이 그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다. 그 관리가 크게 깨닫고 그 말대로 하자, 그 부인이 항상 김상헌을 욕하기를, “저 늙은이가 저만 청백리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본받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라고 하였다.

4. 청탁을 물리침[屏客]

관아에 책객(冊客)을 두어서는 안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을 두어 안채의 일도 살피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책객(개인비서)이 회계를 맡아 날마다 쓰는 쌀과 소금 등의 장부를 살피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아의 회계에는 공적으로 사용한 것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모두 기입되고, 많은 아전과 하인이 관계되어 있는데, 지위도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모두 살펴보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 및 관노들과 함께 ‘많다, 적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하니 어찌 사리에 맞는 것이겠는가.

서기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무릇 수령의 집안일은 가노(家老)를 한 사람 두어 아래와 위를 이어주고 안팎을 통하게 해야 한다. 잔일들을 수령이 직접 관장하면 체모가 손상되는 일이 있고, 자제들이 관장하면 비루해지기 때문에 가노는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수령은 자기 고을 사람과 이웃 고을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된다. 관부(官府) 안은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요즘에는 수령이 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안부를 묻는 풍속이 있다. 토호와 간사한 백성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고 있어, 수령이 부임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그들을 찾아가 인사하라 하고 일마다 비호해주도록 부탁한다. 옛날에 참판 유의(柳誼)가 홍주목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청탁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 무 용통성이 없다고 하자, 유공은 “주상께서 이미 홍주 백성을 나 같은 신하에게 맡겨서 그들을 구휼하고 비호해주도록 하셨으니, 조정에 있는 고관의 부탁이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어찌하여 이를 넘어설 수가 있겠소. 만일 내가 편벽되어 한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비호하면, 이는 군왕의 명

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소"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감복하여 더 말하지 못했다. 모름지기 토호를 찾아 인사하는 것은 경솔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에는 부임하고 3개월 정도 찬찬히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고, 힘으로 백성을 강압하거나 간사한 행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찾아가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물 목록의 끝에는 "결코 답례하지 말라"고 써야 한다.

조정에서 벼슬을 살다가 물러난 자는 비록 쇠잔해진 음관(蔭官)과 무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찾아가 인사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뜻이다. 그들 중에 혹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거절해서는 안된다. 서로 만나는 날에는 "뜻이 두텁지 않은 비는 아니나, 예에는 한계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공과 약속하고자 합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요, 모일 일이 있으면 내가 초청하여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자는 것이니 이해해주십시오"라고 약속을 하라. 그리고는 아전들에게 이 약속을 단단히 알려주어야 한다.

고을 안에는 반드시 문사(文士)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서 시(詩)와 부(賦)를 쓰는 걸로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 삼아 농간을 부리니,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 만나서는 안된다. 또 풍수(風水), 사주풀이, 관상, 점(占), 한자(漢字)를 집게 해 자획을 풀어 길흉을 점치는 파자(破字) 등 여러 가지 요사스럽고 허랑한 술수를 가진 자가 수령과 인연을 맺으면, 작게는 정사를 문란케 하고 크게는 화를 입게 할 것이니 마땅히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그림자조차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오직 의원만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내가 의술을 모르고 그 사람이 정통하면 필요할 때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심분 조심하여 삼가고, 보수는 후하게 주되 입을 열어 청탁하게 해서는 안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둬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가 본 고을이나 이웃 고을에 살면 한번은 초청하여 보고 한번은 가서 보며,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비록 날마다 보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말기 바란다. 편지 왕래도 역시 의심과 비방을 살 터이니,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 할 경우에만 몇자의 편지를 써서 풀로 봉하지 말고 직접 예리(禮吏)에게 주어 공개리에 보내도록 하라"고 약속하라.

늘 보면 친척들이 때를 틈타 청탁을 하여 인심을 잃는 일이 거둬 쌓이면, 수령이 떠난 후에는 강은 흐르되 들은 그대로 남는 것처럼 못사람들의 분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 잘 지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편지하여 청탁하는 것을 들어줘서는 안된다.

포증(包拯)이 개봉부(開封府)를 맡았을 때 사람됨이 굳세고 엄하여 사사로이 청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로운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염라대왕과 포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유익이 홍주목사로 있을 때 나는 금정역(金井驛) 찰방(察訪)으로 있었는데, 내가 편지를 띄워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홍주에 가서 만난 자리에서 “왜 답장을 하지 않았소?”라고 물어보자, 그는 “나는 수령으로 있을 때에는 원래 편지를 뜯어보지 않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시중을 드는 아이에게 편지함을 쏟으라고 명령하였는데, 조정의 귀인들이 보낸 모든 편지가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내가 “그건 참으로 그럴 만하지만, 내 편지는 공무였는데 어찌 뜯어보지 않았소?”라고 묻자, 그는 “만일 공무였다면 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마침 그것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었소”라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왜 비밀히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가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즉시 영접하여 후하게 대접해 보내는 게 마땅하다.

선인(先人)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정말 어렵다. 진실로 청렴한 선비와 고상한 벼은 비록 지극히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부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는 자는 대개 조심성도 없고 어리석거나 구차하고 비루한 사

람들이니, 혹은 그 얼굴이 밍살스럽고 이야기조차 흥미가 없으며, 혹은 무리한 일을 청탁하고 요구가 끝이 없으며, 혹은 닳아빠진 신발을 신고 남루한 옷차림에 이가 득실거리며, 혹은 내가 일찍이 액운을 만나 궁했을 때에는 전혀 돌보거나 불쌍하게 생각지도 않던 자들이다. 형세가 좋아지니까 아첨하며 붙는 그 정상이 밍살스러워서 내가 온화하고 흠족히 대접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대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짓는 것과 같다.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잘 짓는 것은 잘한다고 일컬을 게 없으며, 반드시 어려운 제목으로 묵묵히 생각하여 남달리 문장에 운율을 주고, 번쩍 빛이 나게 하며, 쟁그렁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고수(高手)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땅히 측은히 여겨 사랑해주고, 반갑게 영접하며, 얼굴빛도 유쾌하게 하며, 웃음과 말씨도 화평하고 즐겁게 하고, 따뜻한 방에 재우고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새 옷을 주되, 돌아갈 때에는 그의 돈주머니도 넉넉히 채워주어 낭패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옛날에 참판 이기양(李基讓)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우하여 달포도 못되어 칭찬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가 화를 입자 눈물짓는 자가 유독 많았으니 이런 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청에 잡인의 출입을 엄하게 금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데, 이는 덕스럽긴 하지만 정사는 할 줄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이지 손님접대가 아닌데, 생전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만나

볼 수 있겠는가? 문지기에게 “무릇 손님이 문 밖에 이르면 우선 따뜻한 말로 기다리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고하여 처분을 듣도록 하라”고 다짐 해두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사로이 관부에 출입하는 자는 곤장이 100대이다. 오직 아버지·아들·사위·형·아우만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생각전대 국가의 금령이 이와 같으니 무릇 몸을 닦고 행실을 돈독히 하는 선비는 반드시 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5. 씹씹이를 절약함[節用]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는 겨우 한 고을을 얻기만 하면 교만방자하고 사치해져 절제하는 바 없이 손닿는 대로 합부로 써버리고, 부채(負債)가 많아지면 반드시 탐욕스럽게 된다. 탐욕을 채우려면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고,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면 그 이득을 나누어야 되며, 그 이득을 나누게 되면 백성의 고향이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안정복(安鼎福)은 이렇게 말하였다. “재물을 낭비하는 근본은 항상 처

침을 데리고 부임하고 자제를 왕래하게 한다든가, 권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며 결탁한다든가, 기구를 제작한다든가, 진귀하고 기이한 보물들을 수집한다든가 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을 법도로 삼아야 한다. 조금만 법도를 넘어도 씹씹이에 절도가 없어져버린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을 입도록 힘써야 한다.

아침저녁의 식사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에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접시란 구운 고기 한 접시, 마른 고기 한 접시, 절인 나물 한 접시, 젓갈 한 접시이니, 이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

요즈음 수령들은 온갖 일에는 다 체모를 잃으면서도, 오직 음식만큼은 망령되이 스스로를 존대하여 옛법을 따른다고 한다. 크고 작은 두 상에 홍백(紅白)의 밥을 함께 차려놓고, 안채와 바깥사랑의 두 군데 반찬에는 수륙(水陸)의 진미를 갖추어놓고서 수령의 체모란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종과 기녀의 차지가 된다. 내 직분을 제대로 못하면 나쁜 음식일지라도 오히려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에는 힘쓰지 않고 단지 음식만 탐을 내니 어찌 가소롭지 않은가? 합부로 낭비하면 재정이 딸리게 되고, 재정이 딸리면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종과 기생만 챙기고 백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백성을 착취해 기생을 살찌우니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또 처음에 왔을 때에는 검소하게 하다가 몇달 지

나지 않아 음식 가짓수를 늘리는 자가 많다. 그러면 아전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서로 전하면서 수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웃을 것이다. 수령인들 창피하지 않겠는가?

진서산(眞西山)은 나물을 논하면서 “백성에게는 하루라도 굶주린 기색이 있어서는 안되고, 사대부는 하루라도 나물맛을 몰라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얼굴빛이 나물색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사대부가 나물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말단직에서 공경대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벼슬아치들이 나물 뿌리를 씹을 줄 알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도 반드시 알 것이니,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나물빛을 떨까 근심하겠는가?”

유정원(柳正源)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때는 언제나 채찍 하나만 가지고 길을 나섰고, 의복이나 가구는 조금도 불어나지 않았다. 자인(慈仁)에서 교체되어 집에 돌아와 있는데, 관아에 남아 있던 그의 아들이 헌 농작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속이 비면 쉽게 찌그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농작 속에 짚을 채워넣었다. 고을 살이를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 아낙네들이 몰려와 다투어 농작 속을 보려고 하였는데, 짚단임을 알고는 모두 한바탕 크게 웃고 헤어졌다.

제사와 손님맞이는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마땅히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쇠잔한 작은 고을은 법도보다 줄여야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친께서는 여러 고을 관관

을 역임하면서 손님이 오면 늘 술을 대접했는데, 세 순배 혹은 다섯 순배를 하되 일곱 순배를 넘는 일은 없었다. 술은 저자에서 사왔고, 과일은 배·밤·대추·감뿐이었고, 안주는 건포·젓·나물국뿐이었으며, 그릇은 자기(磁器)와 칠기(漆器)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는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다. 모임은 잦았으며 예는 은근하였고, 물건은 박하였으나 정은 두터웠다.”

무릇 아전과 종이 바치는 물건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마땅히 더욱 절약해야 한다.

이득준(李得駿)이 강진현감(康津縣監)으로 있을 때 안채 앞뒤에 채소밭을 크게 가꾸어 안채의 노비들을 시켜 거름 주고 김매게 하였다. 그 채소밭이 기름져 채소가 잘 자라 사시장철 채소가 끊이지 않아 원노(園奴)가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감해주었고, 또 먹고도 남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칭송하는 것이 전해져 미담이 되었다.

정선은 말하였다. “옛날에 어떤 현령이 있었는데 매우 청렴하고 아주 깨끗하였다. 서울에서 공적인 일로 편지가 왔는데, 관용(官用)의 촛불을 켜고 봉한 편지를 뜯어서 보다 속에 집안의 편지가 들어있자, 곧 그 촛불을 끄게 하고 자기 초를 꺼내어 켜고서 편지를 읽었다. 읽기를 마친 후에야 다시 관용의 촛불을 켜다. 비록 잘못을 고치는 것이 지나치게 심하기는 하지만 취하여 풍속을 바로잡을 만하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고을마다 반드시 공용의 재정이 있어 여러 창고가 설립되어 있다. 처음에는 공용이었지만, 설립한 지 오래 되면서 점차 사용으로 지출되어 그릇된 관례가 겹겹이 생기고 절제없이 낭비하게 되었다. 본래 공용이었기 때문에 수령은 끝내 살피지 못하고, 창고를 감독하는 아전과 종은 갖가지로 속여 오로지 몰래 훔쳐 먹으려고만 한다. 창고가 비게 되면 또 거둬 거두어들이는바, 이는 여러 도의 공통된 폐단이다.

수령은 한 고을을 주재하는 사람이니 한 고을의 일 가운데 관장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책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으니 어찌 핑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날마다 지출하는 내용의 기록은 마땅히 조목조목 살펴야 하며, 아무리 작은 지출이라도 방심하여 지나쳐서는 안된다. 관아 주방의 지출기와 관속들의 일용잡비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육을 먹고, 여러 창고의 지출기와 향교의 지출기는 세밀하게 살피면 위엄이 서게 되는바, 이는 그 공(公)과 사(私)의 차이 때문이다. 제정한 법도가 본래 치밀하지 못하면 조목을 고치거나 그릇된 관례를 폐지하거나 허점을 보완하여 영구히 폐단을 없게 해야 한다.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의 액수는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부에 전해 내려오는 돈과 곡식 등 여러 재물은 통틀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이를 중기(重記)라고 한다. 갈려 돌아갈 때에는 쓰고 남은 것을 대략 중기에 기재하는데, 이를 기부라고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할 때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초하루 보름의 회계일마다 관부에서 쓰는 여러 물품을 약간 남겨두었다가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치현결』에 말하고 있다. “관아 주방에서 쓰이는 것은 이미 모두 달로 쪼개어 배당하였으니 당겨쓰지만 않으면 걱정할 것은 없다. 나머지의 돈과 곡식은 항상 뒷날을 염려하여 낭비하지 않아야 끝에 가서 걱정이 없다.”

6. 베풀기를 좋아함[樂施]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연못에 물이 껴어 있음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사람은 능히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게 마련이다. 기생을 불러 가야금 타고 피리 불게 하고, 비단 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쓰며,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바치는 돈이 하루에 수만 전을 넘고 1년에는 억만 전이나 되는데 어찌 친척들에게 베풀 수 있겠는가? 아껴 쓰는 일은 베풀기의 근본이

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보면,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는 옷차림이 반드시 검소했고, 나를 돌보지 않은 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겼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형제와 숙질(叔姪) 등 한 집안 사람들은 비록 입지에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수를 헤아려 달마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 가난함이 심하지 않으면 간혹 물건을 보내준다.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서도 조금 남은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이창정(李昌庭)이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있을 때 그와 이름도 같고 관품(官品)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딸의 혼수(婚需)를 도움받으러 왔으나 이창정을 보니 딴 사람이라 실망하여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창정이 자리를 권하고 천천히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실토하였다. 이창정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고 더욱 후하게 대접하고, 혼수를 준비해주되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하였다. 그 사람이 “비록 내 친구가 마련해준다 하더라도 이같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감사하며 말했다.

내 녹봉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만약 공채(公債)가 많으면 마땅히 그 상황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그들로 하여금 기다렸다가 여력이 생겼을 때에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관의 공간을 탕진하여 아전들이 목을 매고 관노(官奴)가 도망치며 그 해독이 고을 전체에 미치게 되면, 베풀었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친구 윤의심(尹畏心)은 해남현감인 아우가 공채가 아직 많은데도 제수(祭需)를 보내오자, “아래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다”고 하며 물리쳤는데, 이것은 격언(格言)이다. 제사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의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풀어 친척들을 도와준다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벼슬살이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남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벼슬 사는 동안 자기의 농토에서 거둔 수확을 집에 가져다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팔아서 그것으로 농토를 더욱 넓히는 것을 말한다. 병법(兵法)에 “군량을 적에게서 마련하고 아군의 식량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관리들의 마음이 백성을 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의 농토에서 나온 수확을 일가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관가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집(李穡)이 여러 번 군현(郡縣)을 맡았는데, 벼슬에 있을 때는 동생인 구(構)에게 대신 집안일을 맡겼다. 흉년이 드는 해마다 이집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집안의 저축을 먼저 여러 친족에게 나누어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하인들과 이웃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흉년 든 틈을 타 논밭을 더 늘리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제 몸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마 저들을 굶주리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경상도의 하양(河陽)에서 돌아와서는 그동안 하인이 장리(長利) 놓은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그 하인에게 곤장을 때렸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객지생활이 곤궁하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진 사람이 힘쓸 일이다.

박대하(朴大夏)가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있을 때 정온(鄭蘊)이 바른말을 하다가 제주도로 귀양가면서 나주를 지나갔다. 박대하는 정온과 하루의 사귄도 없었지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온이 감탄하고 갔다.

전란(戰亂)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했을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홍이일(洪履一)이 대구판관(大丘判官)일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조령(鳥嶺) 이남은 전란이 미치지 않아서 피난온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는 이들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모두 과분한 대우에 기뻐하였다. 그는 “이런 때를 당하여 한 고을의 풍요를 독차지하여 어찌 제 혼자만 넉넉하게 살면서 다른 이의 굶고 굶주림을 그냥 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사대부들이 살 곳을 잃고 유랑하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느날 관찰사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를 맑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손들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농담을 하자, 그는 웃으면서 “처신함에 있어서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를 자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권문세가를 후하게 섬겨서는 안된다.

권문세가에 선물 보내기를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의뢰하여 서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선물을 보내되 먹는 것 몇가지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밖에 모피·인삼·비단 같은 값진 물건은 결코 바쳐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상으로서 청렴하고 명석하며 식견 있는 사람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을 비루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기며, 혹 임금 앞에 가서 그 사실을 아뢰어 벌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는 재물을 잃고 망신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만약 그 재상이 뇌물을 즐기며 받고 이로 말미암아 벼슬자리를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래지 않아 패망할 것이요, 그의 사인(私人)으로 지목당하여 크게 연루자가 될 것이고, 작게는 앞길이 막히게 될 것이 필연의 이치이다. 이렇듯 저렇듯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터이니 어찌 구태여 이런 일을 하겠는가.

봉공(奉公) 6조



1. 교화(教化)를 펼침
2. 법도를 지킴
3. 예의있는 교제
4. 보고서
5. 공물 바치기
6. 차출되는 일

정봉(鄭鵬)이 청송부사(靑松府使)로 있을 때 재상 성희안(成希顔)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성희안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조숙(趙涑)이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을 때 대궐질로 방석을 만들어 채유후(蔡裕後)에게 보내어 그의 초가집에서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채유후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기와집에는 이 방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보내지 않았다. 채유후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였다.

정봉(鄭鵬)이 청송부사(靑松府使)로 있을 때 재상 성희안(成希顔)이 잣과 꿀을 요구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는데, 수령 된 사람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성희안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하였다.

조속(趙涑)이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있을 때 대궐질로 방석을 만들어 채유후(蔡裕後)에게 보내어 그의 초가집에서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채유후의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기와집에는 이 방석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보내지 않았다. 채유후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였다.

● 제3부 ●

봉공(奉公) 6조



1. 교화(敎化)를 펼침
2. 법도를 지킴
3. 예의있는 교제
4. 보고서
5. 공물 바치기
6. 차출되는 일



1. 교화(教化)를 펼침[宣化]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丞流],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퍼는 것[宣化]'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살피건대 선화와 승류는 수령의 책임이거늘 오늘날은 오직 감사의 관청에만 '선화당(宣化堂)'이란 현판을 써붙여놓으니, 수령들은 이 현판을 보고 선화와 승류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들은 부세(賦稅)를 독촉하여 상급관청의 꾸지람을 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찌 슬프고 답답하지 아니한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임금의 팔과 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힘을 사방으로 퍼려고 하니, 군수와 현령 된 자들

이 따라서 사방에 힘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조정의 은덕을 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을 사모하고 받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민목(民牧)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령 된 지는 학정을 해서 원망이 조정으로 돌아오게 한다. 부세의 징수를 연기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굶어내어 스스로 치부하기 위한 거래를 자행하며, 부채를 탕감하라는 조서가 내렸으나 감추어 반포하지 않고 아전들과 작당하고 농간하여 그들의 요리(料理)에 이바지하며, 병자를 구호하고 시체를 묻어주라는 명령도, 결혼 못한 자의 혼인을 권하고 부모 없는 어린이를 거두어주라는 명령도 감추어 반포하지 아니한다. 수해를 입었을 때나 가뭄이 들었을 때 조정에서는 세금을 탕감해주었으나 여전히 거둬 가로채 먹고는 “조정에서 수해(혹은 가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며, 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호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한다”고 하며, 굶사등이는 원래 강제노역이 면제되어 있음에도 이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하면 “조정의 명령이 지엄하니 난들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며, 무고한 백성을 가두고 죄를 면해준다며 돈을 바치라 하면서 “조정의 금령이 본래 엄한데 네가 어찌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하며 아우성치게 한다. 아, 이래서야 되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백성을 대할 때마다 오직 조정의 은덕을 펴는 것을 제일의 직분으로 삼는 것이 옳다.

2. 법도를 지킴[守法]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신하 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책상 위에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놓아두고 항상 펼쳐보아 그 조문과 사례를 갖추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고 소송을 판결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되니, 비록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율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된다.

확연히 지킬 것을 지켜 흔들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아니하면, 곧 인욕(人慾)이 물러나고 천리(天理)가 흘러 행해질 것이다.

허조(許稠)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맑은 절개를 지키며 굳세고 밝게 일을 처리하였는데, ‘非法斷事 皇天降罰(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여덟 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동헌에 걸어놓고 있었다.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라의 법전을 찾아봐서 만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시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임자가 법을 어긴 일이 전해져 내려와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것이 있다면, 글을 주고받아 바로잡을 길을 강구하되, 저쪽이 움직이지 않거든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일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으로 '감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폄하하지 아니할까, 어사가 이를 들으면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러한 근심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끈게 법만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일 처리에 너무 구애받을 수도 있다. 다소 넘나들이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옛사람도 혹 변통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의 마음이 천리의 공평함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왔다면 조금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법을 어겨 죄를 받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한 일이니, 이같은 경우는 다소 넘나들이 있을 수 있다.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명준(李命俊)이 고산찰방(高山察訪)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역(驛)이 함경도의 요지에 있어 역마(驛馬)를 타는 자들이 법의 한도를 넘

어서 지나치게 요구하였으므로 역졸들이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률대로 집행하여 굴하지 않았다. 감사가 와도 반드시 마패(馬牌)대로만 역마를 지급하자, 감사가 노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투다가 결국 조정의 명령을 요청하니, 조정에서는 그가 옳고 감사가 그르다고 하였다. 오래된 폐단은 곧 고쳐졌으나 그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버렸다.

법으로서 해가 없는 것은 지켜서 변경하지 말고, 관례로서 사리에 맞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버리지 않도록 한다.

주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사를 하되 큰 이해관계가 없으면 반드시 뜯어고치기를 의논할 것은 없다. 뜯어고치기를 의논하면, 고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반드시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 끝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조극선(趙克善)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있을 때에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관복을 입고 정사를 보았는데, 요란스럽게 변경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무릇 어떤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점차로 해야 한다. 부임하자마자 곧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놓고 그 뒤를 잘 이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가 없게 될 우려가 있게 된다. 마땅히 먼저 몹시 지나친 것부터 제거하여 점차 모든 폐단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옛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변경하는 일을 경계한 것은 지킬 만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현에서 쓰고 있

는 것은 국법이 아니고, 모든 부역(賦役)과 징렴(徵斂)이 다 아전들의 방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마땅히 급히 개혁할 일ियो,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니, 그중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여 지키면 된다.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를 립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모두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들었으니, 거칠고 잡되고 구차하고 고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다. 이를 핑계로 그 절목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영(令)을 시행하니, 무릇 백성을 착취하는 절목은 해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취임한 지 몇달이 지났거든 여러 창고의 절목들을 조목조목 조사하고 물어 그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내어, 그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은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한다. 물건 값이 예전에는 싼으나 이제 와서 오른 것은 의논하여 값을 올려주고, 예전에는 비쌌으나 이제 와서 내린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며, 민호(民戶)가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이제 와서 쇠잔해진 경우에는 의논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며, 예전에는 적었으나 이제는 많아진 경우에는 옮겨서 고르게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서 수령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 없애고, 법에 없는데도 여러 가지로 거두는 것은 한도를 정해야 한

다. 정밀히 생각하고 살피며 널리 물어서 용단을 내리되, 뒷날의 폐단을 고려해서 막아버리고, 못사람의 뜻을 좇아 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공평하게 지키면,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간 후에 뒷사람이 지키는지 여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살피서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3. 예의있는 교제(禮際)

예의있는 교제는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아야 치욕을 피할 수 있다.

존비(尊卑)의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의 표식이 있는 것이 옛날의 원칙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채색을 다르게 함은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위직은 마땅히 본분(本分)을 지켜 상위직을 섬겨야 한다. 나는 문관(文官)이고 상대가 무관(武官)이라 하여 팔시해서는 안되고, 내가 세력이 크고 상대가 세력이 약하다 하여 교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내가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하여 그를 우둔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나는 나이가 많고 그는 젊다 하여 그를 딱한 듯이 대해서는 안된다. 엄숙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온순하여 감히 예(禮)를 잃지 않으며, 화평하고 통달하여 서로 끼이고 막힘이 없게 하면, 정과 뜻이 서로 공감하게 될 것이다. 백성을 위한 일을 할 때 상대가 자애롭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에 굽혀 좇아서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

후한의 소장(蘇章)이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청하태수(清河太守)로 있었다. 소장이 관할 지역을 순행하면서 그 친구의 부정을 다루게 되었다. 소장이 먼저 주연을 베풀어 태수를 극히 환대하니, 태수가 기뻐하며, “남들은 모두 한 하늘만 이고 있는데 나는 홀로 두 하늘을 이고 있다”고 하였다. 소장은 “오늘 저녁에 내가 옛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요, 내일 기주자사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의 죄를 들어 바르게 처리하니 고을 경내가 숙연하였다.

심지원(沈之源)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 판서 임담(林潭)이 충청감사가 되어 순행하다 홍주에 왔다. 심지원은 평소의 친구라 접대를 자못 간소하게 하였더니, 임감사가 홍주 아전을 매질하면서 “너의 수령이 비록 나와 교분이 가까우나 상관과 하관 사이의 체모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너의 수령이 실수를 하였으니 네가 대신 매를 맞아라”라고 말했다. 심지원은 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체모를 잃은 내가, 아전에게 매질한 것을 또 노여워하면 법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끝내 개의치 않았다. 임판서가 나를 깨우친 점이 실로 많다”고 하였다.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은 감영에 대하여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요즘 사람들은 망령되어 스스로 교만하여 몸을 굽혀 윗사람 섬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사단을 일으켜 감영과 다투는데, 이는 이치에 순응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투어도 좋다.

판서 권대재(權大載)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를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였다. 일찍이 공주(公州)의 판관이 되었을 때, 감사가 쓰는 물품도 모두 절약하여 남용하지 않게 하였다. 감영에서 일하는 무리들이 사단을 일으키고자 모의하여 배당해준 땀감을 빼들려 감사의 방구들이 항상 냉랭하였다. 감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이 “땀감이 원래 적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감사가 판관을 꾸짖으니, 권판관이 “감히 감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 그날 몸소 군불넣기를 감독하여 정해진 분량의 땀감을 모두 때니 방이 화로같이 뜨거웠다. 감사가 견디지 못하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하며 사과하자, 그제서야 물러나왔다.

상급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관청이 까닭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